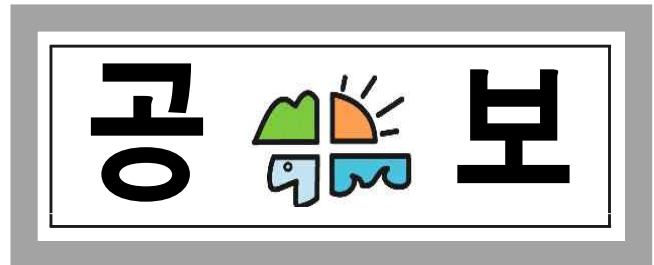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98호 2013년 9월 27일(금)

조 례

-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

공 고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22
-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24
-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8
-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속초시조례 제 2334호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u>월 3만원</u>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u>15만원</u> 지급 3. (생략)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u>월 5만원</u> 지급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u>20만원</u> 지급 3. (현행과 같음)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속초시 조례 제 2335호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또는활동”을 “또는 활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속초시에설치”를 “속초시에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를 “ “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
(이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별도로계리한다”를 “별도로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연할수”를 “출연할 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세입세출예산외”를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금융기관을말한다)”를 “금융기관
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을 “회계연도”

로, “시의회에제출”을 “시의회에 제출”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여비를지급”을 “여비를 지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시의회”를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절차및”을 “절차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속초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u>또는</u>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u>따라</u> 속초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u>또는</u>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속초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u>속초시에 설치된</u> 기금을 말한다. 2. (생략) 3.“ <u>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u> ”(이하 “ <u>운용기금</u> ”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u>기타</u>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속초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u>속초시에 설치된</u> 기금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 <u>속초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u> ”(이하 “ <u>운용기금</u> ”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u>그 밖의</u>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계좌에서 <u>별도로</u> 계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계좌에서 <u>별도로 회계처리</u>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u>각호</u>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4. <u>기타</u>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u>각 호</u>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수입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③시장은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7.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의2(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의2(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② (생략)

<신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
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관계규정의 준수) ① 기금의 관리
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
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
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규정의 준수) ① 기금의 관리
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
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속초시 조례 제 2336호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는데필요”를 “하는데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하여속초시체육진흥기금”를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제2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과반수 이상의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을 “대해서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으로, “속초시의회제출하여”를 “속초시의회 제출하여”로 한다.

제13조 중 “함께속초시의회”를 “함께 속초시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u>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u>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u>속초시체육진흥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u>속초시체육진흥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u>각호</u>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u>각 호</u>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기타 수입금</u>	3. <u>그 밖의 수입금</u>
②시장은 매 <u>회계년도</u> 마다 일정액을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 <u>회계연도</u> 마다 일정액을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u>각호</u>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u>각 호</u>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u>그 밖에</u>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u>목적외</u> 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u>목적 외</u> 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② 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분의 1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생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성과분석) 시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까지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성과분석) 시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속초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속초시 조례 제 2337호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회의의 운영 등) 협회의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을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 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의2제1항 중 “시 소재 대규모점포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하고,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8시”를 “10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로 하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제2호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는 속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3항(중전의 제2항)의 내용** 중 “정한다”를 “정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중전의 제3항)의 내용** 중 “과세증명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하고, **제5항(중전의 제4항)의 내용**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u>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u>	제명 <u>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유통기업 상생 발전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u>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7.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조제4호</u> 4.“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u>제3호의</u>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u>쇼핑 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u>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 하는 자 중 <u>제4호</u>의 대형유통..... 6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① ~ ⑤항 삭제

현행	개정안
가.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나. 시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실시에 관한 사항 6.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1. ~ 9.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u>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u>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u>대규모 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u>)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계획서 ② ~ ⑤ (생략)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u>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u> 제11조에 따라<u>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u> <u>준대규모 점포</u>)는 <u>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u>제5조에</u> 따른 첨부서류 <u>2. 상권영향평가서</u> <u>3. 지역협력계획서</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u>시 소재 대규모점포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u>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u>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u>오전 8시까지</u>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u>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u>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u>55퍼센트</u>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u>오전 10시</u>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u>매월 이틀로 하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제2호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는 속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로 본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③ <u>정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u> ④ (연도마다..... <u>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u> 등을.....). ⑤ 시장은 <u>제4항에</u> 따라
제 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 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u>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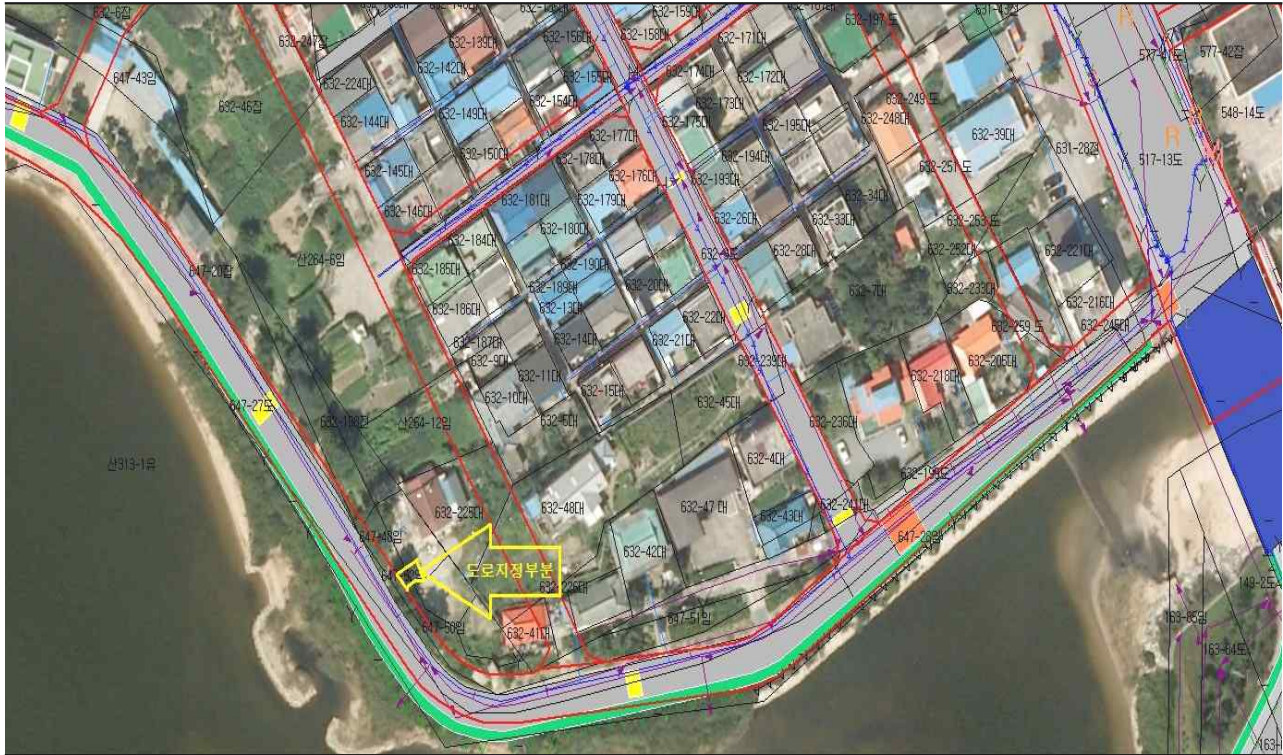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32-201, 647-52번지
3. 공고기간 : 2013. 9. 27.~ 2013. 10. 12.(15일간)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32-201	전	181	16	오순예	2013-신축허가- 59호 (2013년8월02일)	
	647-52	임	10	10	김은호, 오순예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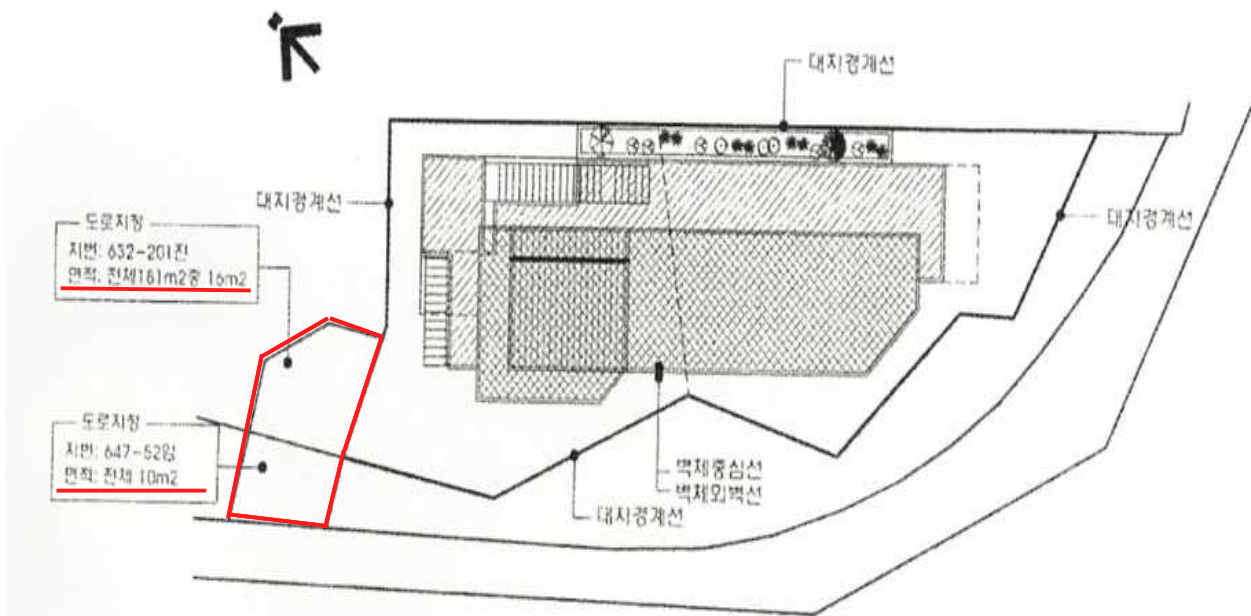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복지법」 (2012. 8. 5 개정)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 3.23) 제10조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지역내 아동복지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요구됨.

3.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안 제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불입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드림스타트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701/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속초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센터 드림스타트담당(전화: 033-639-2664,

FAX : 033-637-1242, E-mail : sw110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담당 이승우(전화번호 : 033-639-26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2. 속초 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6.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아동빈

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건강, 그 밖에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고 제2013—586호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LNG 도시가스가 주로 도심 및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될 계획으로 있으나 공급배관 설치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는 고지대 및 도심외곽의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공급관설치 비용 중 개인가구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LNG 도시가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공급대상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함. (안 제5조제1항)
- 나. 지원 규모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보조금 지원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7조 내지 제9조)
- 라. 보조금 지급절차는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희망일자리추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 소 : 우 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469-6)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에너지관리팀)
- 전 화 : 033-639-2375
- F A X : 033-639-246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주무관 서영애(033-639-23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다.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1명)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⑤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전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리담당이 되며 서기는 에너지관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급절차) 사업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 및 간사를 표준안에 맞춰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 － 제명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개정
 - 나.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6조)
 - － 위촉위원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개정
 - 다. 위원회 간사 (안 제6조)
 - －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에서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에서 “관련업무 담당자”로 개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여성정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전화: 033-639-2442, FAX: 033-639-2739, E-mail : huija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담당자 홍희재(전화번호 : 033-639-2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을 “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여성폭력관련”을 “여성폭력 관련”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u>속초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 1. · 2. (생략)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여성가족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u>여성폭력</u>	<u>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u>속초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 호</u>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여성가족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u>여성폭력</u>

관련 시설

5. ~ 7. (생 략)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시설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